

연차사용촉진공고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운영규정 내 복무규정 제3장(휴일 및 휴가) 17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의거하여 2024년 07월 03일부로 연차 사용촉진을 공고하고 2024년 연차 사용을 다음과 같이 독려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 직원은 2024년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4년 12월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10월 31일까지 미사용 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연차 사용촉진 공고에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모두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장17조(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효경재가노인돌봄센터장

